

감사보고서

강원도지사 및 원주의료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원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 기 지적사항인 재고관리에 대한 문제

약재재고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7일에 재고실사를 실시하여 실재고와 전산재고의 차이나는 부분을 출고로 처리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듯이 2017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재고가 장부에 반영되는 과정 및 실재 재고와 전산재고 사이의 차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재고와 전산재고의 차이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재재고의 경우 품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차이금액이 1백7십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원인 파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관리적 차원에서 보면, 실재고와 전산재고의 차이는 그 차이의 유의성에 따라 일상적인 사항과 비일상적인 사항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재고관리의 통제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재고실사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전산재고와 실물재고가 차이나는 내역 및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정관위배 사항

강원도원주의료원 정관 제11조(겸직)에 따르면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이외의 직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의

료원법 제13조에 따라 검직하고지 하는 때에는 원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직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료원장은 의료원연합회의 감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원주의료원장은 감사일 현재 도지사의 승인없이 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위배사항에 대하여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검직에 대한 규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접대비의 사용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축의 또는 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유관기관에 대한 접대성 지출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유관기관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증빙을 반드시 갖추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일자	내역	집행액	지급대상
2017-10-25	부의금(기독병원안과과장 모친상)	50,000	기독병원안과과장
2018-03-12	부의금(유관기관 원장모친상)	50,000	유관기관(미래산부인과) 원장
2018-03-29	부의금(유관기관 원장모친상)	50,000	유관기관(기독병원) 원장
2018-04-02	과일바구니제공(유관기관 모친 병문안)	50,000	유관기관 원장

2018-04-04	부의금(기독병원 외과의 부친상)	50,000	기독병원 외과의
2018-04-19	부의금(직원부친상)	50,000	직원 박종천
2018-05-31	축의금(유관기관장 자녀결혼)	50,000	원주시보건소장

2018년 6월 22일

감사 정재훈

